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의사록

1. 일시 : 2019년 1월 23일 오후 2시
2.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소재 본점 회의실
3. 의안 :
  - 1) 제1호 의안: 자금관리계좌, 대출금입금계좌 및 수입금관리계좌 개설의 건
  - 2) 제2호 의안: 자본금 및 주금 예치의 건
  - 3) 제3호 의안: 주식양도 승인의 건
  - 4) 제4호 의안: 신주 발행의 건(기명식 보통주식)
  - 5) 제5호 의안: 신주 발행의 건(기명식 에이종 종류주식)
  - 6) 제6호 의안: 임대주택리츠 표준사업약정서 체결의 건
  - 7) 제7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4. 참석자 :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의장인 대표이사 한정수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자금관리계좌, 대출금입금계좌 및 수입금관리계좌 개설의 건

의장은 회사가 자금관리계좌, 대출금입금계좌 및 수입금관리계좌를 국민은행에 개설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이에 출석 이사들은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의장의 제안대로 자금관리계좌, 대출금입금계좌 및 수입금관리계좌를 국민은행에 개설하기로 한다.

**제2호 의안: 자본금 및 주금 예치의 건**

의장은 회사가 회사 설립시의 자본금 3억원 및 추후 회사가 신주 발행시 수령하는 주금(416억원 및 100억원 합계 516억원) 합계 519억원을 하나은행에 개설된 자금관리계좌(2018. 12. 21.기준 적용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에 예치하고, 하나은행이 그에 대한 주금 납입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자금관리계좌 적용 금리>

구분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예치기간 7일미만	0.10%	0.15%	0.25%	0.40%	0.40%
예치기간 7일이상	0.10%	0.15%	0.25%	1.1%	1.25%

이에 출석 이사들은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의장의 제안대로 자본금 및 주금 합계 519억원을 자금관리계좌에 예치하고 국민은행이 주금 납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3호 의안: 주식양도 승인의 건**

의장은 경기도시공사, 교보증권 주식회사(“교보증권”), 베스트에스피씨 주식회사(“베스트SPC”),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서울투자운용”) 및 우양태 사이에 체결될 별첨 1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교보증권이 소유한 주식 5,900주, 베스트SPC가 소유한 주식 6,000주, 서울투자운용이 소유한 주식 9,000주 및 우양태가 소유한 주식 9,100주 전부를 경기도시공사에게 양도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또한, 의장은 정관 제9조의2에 따라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을 설명하고 위 주식의 양도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의하다

이에 출석 이사들의 심사숙고를 거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의장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교보증권, 베스트SPC, 서울투자운용 및 우양태 사이에 체결될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상기 주식의 양도를 승인한다.

#### 제4호 의안: 신주 발행의 건 (기명식 보통주식)

의장은 회사가 정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기명식 보통주식)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액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동 자본증가의 조건과 내용을 회의에서 설명한 후에, 의장은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제의하다.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

1 주의 금 액 : 10,000원

발 행 가 액 : 1주당 10,000원

청 약 일 : 2019년 1월 28일

납 입 일 : 2019년 2월 8일

납입을 맡을 은행: 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 지점

인 수 방 법 :

정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경기도시공사에게 신주(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를 전부 배정함. 인수청약이 있는 주식의 수가 회사 신주 발행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권주 배정을 위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예정자 중 미청약인에 대해 상법 제423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석 이사들은 제안된 신주발행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의장의 제안대로 신주(기명식 보통주식)를 발행한다.

제5호 의안: 신주 발행의 건 (기명식 에이종 종류주식)

의장은 회사가 정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기명식 에이종 종류주식)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액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동 자본증가의 조건과 내용을 회의에서 설명한 후에, 의장은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제의하다.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에이종 종류주식(우선배당률 7.04%)

4,160,000주

1 주 의 금 액 : 10,000원

발 행 가 액 : 1주당 10,000원

청 약 일 : 2019년 1월 28일

납 입 일 : 2019년 2월 8일

납입을 맡을 은행: 하나은행 여의도센터 지점

인 수 방 법 :

정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대한민국(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주(기명식 에이종 종류주식, 우선배당률 7.04%) 4,160,000주를 전부 배정함. 인수청약이 있는 주식의 수가 회사 신주 발행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권주 배정을 위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예정자 중 미청약인에 대해 상법 제423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석 이사들은 제안된 신주발행 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의장의 제안대로 신주(기명식 에이종 종류주식)를 발행한다.

제6호 의안: 임대주택리츠 표준사업약정서 체결의 건

의장은 회사가 별첨 2. '임대주택리츠 표준사업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

이에 출석 이사들은 임대주택리츠 표준사업약정서의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의장의 제안대로 동 임대주택리츠 표준사업약정서의 체결, 교부 및 이행을 승인한다.

제7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장은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결의해 줄 것을 제의하자 출석 이사들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시: 2019년 1월 23일 오후 3시

장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소재 본점 회의실

- 의 안: 1. 신주 발행의 건(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 발행의 건(기명식 에이종 종류주식)  
3. 임대주택리츠 표준사업약정서 체결의 건  
4. 건설공사 입찰 및 도급계약 체결의 건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안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들 및 감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 별첨 1. 주식매매계약서  
2. 임대주택리츠 표준사업약정서

2019년 1월 23일

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한 정 수



기타비상무이사      윤 성 국



기타비상무이사      정 도 영



감            사      김 수 현

